

# 이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제정 2021. 11. 5 규칙 제72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이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사회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
2.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 복지 전문가 및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교통 관련 전문가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해촉·제척·회피)**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 산정 시 제외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